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04호 2019. 03. 11.(월)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547호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548호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7
- 사천시 조례 제1549호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1
- 사천시 조례 제1550호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28
- 사천시 조례 제1551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 32
- 사천시 조례 제1552호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사천시 조례 제1553호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 -----41
- 사천시 조례 제1554호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 사천시 조례 제1555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 사천시 조례 제1556호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56
- 사천시 조례 제1557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60
- 사천시 조례 제1558호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 61
- 사천시 조례 제1559호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68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695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73
- 사천시 규칙 제696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81
- 사천시 규칙 제697호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 -----88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5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92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333호 2019년도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LED등)사업 신청
(추가모집) 공고 -----93
- 사천시 공고 제334호 사천 아쿠아리움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공모 공고 -----98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 604호

사천시 조례 제154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5년마다 1대의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성인용 보행기를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호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또는 물품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연락처	주택		기타
신청품목		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서 1부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①, ②, ③은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사천시 조례 제154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다와 관련된 전통적인 조업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 대책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나잠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1호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해안 경계 내에서 행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장비”란 잠수복, 오리발, 장갑, 수경 등의 나잠어업에 필수적인장비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4. “나잠어업 종사자”란 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제3호에 따른 장비만으로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령화에 따른 나잠어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보호 대책
2. 나잠어업 종사자의 육성정책
3. 나잠어업 종사자의 어장 보호 및 관리
4. 나잠어업 종사자의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대책
5. 그 밖에 나잠어업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

제4조(지원)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관광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해당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2명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3. 나잠어업 종사자 단체 대표 1명
4. 어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1명
5. 어업인 1명

④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업지도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나잠어업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2. 어장보호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3.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복지지원 대책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등) ①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사천시 조례 제154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 라 한다)
2. 위치: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는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헬스장), 탁구장
2. 수치료실, 장애인목욕탕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기능)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
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급 및 육성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체육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 중 다목적체육관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제외하고 체육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장이 인정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이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제9조(체육센터의 개방) ① 체육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우선 개방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센터 시설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재활스포츠의 종류 및 사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개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3.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시설의 개·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체육센터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그 외 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되면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체육시설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3.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2.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제외하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고,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③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체육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사 천 시 공 보

제 604호

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위탁의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 21조의2를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별표 1】

체육센터 사용료(제12조 관련)

1. 다목적체육관 대관료

(단위: 원)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		비 고
		평일	토요일	
다목적 체육관	체육행사	60,000	90,000	○ 단체란 10인 이상을 말함 ○ 기본시간 : 4시간(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0%를 가산) ○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일반행사	120,000	180,000	

· 행사구분

- 체육행사 : 각종 단체 운동경기(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 일반행사 : 각종 교육, 행사, 공연 등(신청시 안내대 문의)

2. 체육센터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사용자	월회원	수시사용료	비 고
다목적 체육관	어린이 및 경로대상	15,000	1,000	○ 기본시간 : 2시간
	청소년	20,000	1,500	
	성인	30,000	2,000	
탁구장	어린이 및 경로대상	15,000	1,000	
	청소년	20,000	1,500	
	성인	30,000	2,000	
헬스장	어린이 및 경로대상	20,000	1,500	
	청소년	30,000	2,000	
	성인	40,000	3,000	

사 천 시 공 보

제 604호

3. 수치료실 사용료

구분	사용자	1회사용료	월사용료	비 고
수치료실	어린이 및 경로대상	2,000원	30,000원	○ 주4회 사용가능(1회 2시간)
	청소년	3,000원	40,000원	
	성 인	4,000원	60,000원	
	장애인(재활치료)	10,000	80,000원	○ 주2회 사용가능(1회 30분)

4. 장애인목욕탕 사용료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성 인	1일/1회/90분	2,000원	○ 가족탕은 중증장애인만 사용 가능함
청소년	1일/1회/90분	1,500원	
어린이 및 경로대상	1일/1회/90분	1,000원	
가 족 탕	2인/1실/90분	4,000원	

5.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별표 2】

체육센터 사용료의 감면율(제13조 관련)

구 분	감면율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 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및 배우자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수업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제6조 관련)

1. 행사명칭 :
2. 시설구분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5.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물

시 설 명	수 량	시 설 명	수 량

6. 사용자가 설비하고자 하는 시설

설 비 명	수 량	설 비 명	수 량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단 체 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무인·날인 혼용)

전 화 번 호 :

사 천 시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서(제6조 관련)

1. 신청자 주소 :
2. 단 체 명 :
3. 대 표 자 :
4. 시설사용 구분 :
5. 사 용 목 적 :
6. 사용기간 또는 시간 :
7.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물 :
8. 설비하고자 하는 시설물

설 비 명	개 수	설 비 명	개 수	설 비 명	개 수

10. 허가조건

- 가.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 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변경사용허가신청서(제6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허가사항	당 초 허 가 사 항		변 경 허 가 사 항	
사용구분				
사용시설명 또는 사용기간				
행사명				
사용기간	평 일			
	토요일			
기 타				
허가기간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명 :

인

사 천 시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변경사용허가서(제6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허가사항	당 초 허 가 사 항		변 경 허 가 사 항	
사용구분				
사용시설명 또는 사용기간				
행사명				
사용기간	평 일			
	토요일			
기 타				
허가기간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하니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별지 제6호서식】

이 용 권(제6조 관련)

(전면)

No.	시마크	No.	시마크
본 권		이 용 권	
구분		구분	
요금	₩ 원	요금	₩ 원
사 천 시 장		사 천 시 장	

(후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반환은 불가합니다. 2. 당 사무소 검인표시가 없는 이용권은 무효입니다. 3. 체육센터 내에서는 제반규칙과 공중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	---

사 천 시 공 보

【별지 제7호서식】

회 원 권(제6조 관련)

NO

회 원 권

- 1. 시 설 명 :
- 2. 성 명 : 성별(남, 여)
- 3. 생년월일 :
- 4. 유효기간 : . . . 부터
 . . . 까지

위와 같이 회원임을 증명함.

사천시장

※ 본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사천시 조례 제155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6조를 삭제한다.
- ② 제2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을 “양성평등”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사천시 조례 제155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관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심의 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3명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영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사천시 조례 제155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료” 라 함은” 을 “사용료” 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람료” 라 함은” 을 “관람료” 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를 “사용예정 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배상하여야 한다” 를 “비용배상은 「국가배상법」 및 「민법」 에 따른다” 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3년” 을 “5년”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제17조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별표 1]

문학관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다목적실	오전	20,000	
	오후	30,000	
	야간	40,000	
	1일	70,000	
<u>집필실(2층)</u>	<u>1일</u>	<u>40,000</u>	
<u>집필실(3층)</u>	<u>1일(1실)</u>	<u>20,000</u>	
정보검색자료출력	A4 1매 기준	100	
자료복사	A4 1매 기준	100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집필실 1일 : 13:00부터 익일 11:00까지
6.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별지 제2호 서식]

박재삼문학관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성 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 여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변경사유				
비 고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별지 제4호 서식]

박재삼문학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성 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 여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사용목적				
감면사유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 604호

사천시 조례 제155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사천시 조례 제155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지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교통봉사단체 등으로”를 “교통지도 봉사단체로”로

사 천 시 공 보

제 604호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교통지도 봉사단체 등에게” 를 “교통지도 봉사단체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사천시 조례 제155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다음연도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를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는 접수일 1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를 “공동주택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13. 그 밖에 공동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2호는 제외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주택단지로서” 를 “공동주택단지로서” 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49조” 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50조” 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일부” 를 “비용 일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축과장” 을 “업무담당 부서장” 으로, “분석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8조에 따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8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하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2. 기계 및 전기 설비 전문가

3. 공동주택관리 및 적산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심의 예정일 15일 전에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연도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나. 사업의 적정 여부

다.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제10조(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신청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청사업과 관련된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제13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 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9조)제1호 중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다만, 제5조제1항제11호” 를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 중 “영 제59조” 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0조” 를 “제15조” 로, “다음년도” 를 “다음 연도” 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15조(중전의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교부결정내용” 을 “교부결정 내용” 으 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월 말” 을 “3월 31일”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한” 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12조” 를 “제17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 를 “제14조” 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4조) 중 “제12조” 를 “제17조” 로, “제6조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5조” 를 “제6조제5항, 제14조제3호, 제15조, 제16조, 제20조”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제22조(중전의 제17조) 중 “ 「사천시재무회계 규칙」 ” 을 “ 「사천시재무회계규칙」 ” 으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18조) 중 “제11조” 를 “제16조” 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19조) 중 “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 ” 를 “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2조)제2항제9호 중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를 “조정위원회” 로 한다.

제32조(중전의 제27조)제1항 중 “제22조” 를 “제27조” 로 한다.

제33조(중전의 제28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 을 “제32조제1항” 으로 한다.

제38조(중전의 제33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전의 제35조) 본문 중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 ” 를 “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로 한다.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 본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단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연 락 처		사용검사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명	지원금 결정(단위 : 천원)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지원비율 (%)
총 계					
지 원 금 지원사업					
착공일		완 공 예정일			

「사천시 주택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남/여)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설한 통장 사본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조정 건명				조정번호	
신 청 인	성 명	(남/여)		전화번호	
	주 소				
피 신청인	성 명	(남/여)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p>「사천시 주택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 년 월 일</p>					
구분	성명	서명	구분	성명	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 통지서

조정 건명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사천시 주택조례」제3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사천시 조례 제155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지하수개발·이용자” 라 함은” 을 “ “지하수개발·이용자” 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지하수이용부담금” 이라 함은” 을 “ “지하수이용부담금” 이란” 으로,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유량계” 라 함은” 을 “ “유량계” 란” 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하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제29조제1항” 을 “법 제20조”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를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9조”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 “지역지하수관측시설” ” 을 “ “지역 지하수관측시설” ”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제3항” 을 “ 「지하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을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으로 한다.

제6조제6항 본문 중 “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 ” 를 “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 을 “법 제30조의3” 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유량계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사 천 시 공 보

제 604호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 등에 기능시험 및 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 을 “법 제30조의3” 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 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를 “규정에도” 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사천시 조례 제155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3조제1항1호 중 “일반운전자금” 을 “경영안정자금”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3년” 을 “4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억원” 을
“5억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사천시 조례 제155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시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시장(市長)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사천시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시장(市長)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유아 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 보호실(모유수유·착유)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 ① 시장(市長)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① 시장(市長)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는 등록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市長)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지원) 시장(市長)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제1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상남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제12조(시설물의 이용료) 시장(市長)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市長)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① 시장(市長)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사천시 조례 제155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시스템에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동물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①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의 구조·보호)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1. 유실·유기동물(길고양이 제외)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9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제8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기준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영 제9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호

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 감시원
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2조(보호비용 부담)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3조를 따른다.

제13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3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 임신 또는 포유중 길고양이 등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의 길고양이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사천시 규칙 제69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 정보공개업무 추진 및 행정정보 공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총괄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처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자료의 취합 등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3. “지원부서”란 제2호의 주관부서에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 및 협조하여 제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처리부서 지정) ①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부서일 경우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제순에 따라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② 4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정보의 공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 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심의요청) ① 심의회에 안전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정보공개 청구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호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서기는 회의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위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안전심의 요청서(제10조 관련)

수신 : 정보공개 총괄부서장

발신 : 처리부서의 장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에 아래와 같이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1. 정보공개청구인 (이의신청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 소 (소재지)	
2. 공개청구내용 (이의신청내용)		
3.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5. 그 밖의 사항		

붙임 1.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 처리부서 검토의견서 1부.

4. 그 밖의 증명자료 각 1부.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제12조 관련)

심의안건				
심의결과				
사 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년 월 일 </div>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건
		가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제12조 관련)

				서기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 재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p>○ 안 건</p> <p>○ 심의사항</p> <p>○ 심의결과</p>								

사 천 시 공 보

제 604호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관리대장

접 수		심 의 안 건	심 의 방 법	처 리 부 서	심 의		비 고
월 일	번호				월 일	결 과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사천시 규칙 제69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제5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다. 시설현대화자금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

제7조제4항 중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 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일반운전자금” 을 “경영안정자금”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 을 “4년”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자차액보전비율(이하 “이자차액보전기본율” 이라 한다)” 를 “이자차액보전기본율”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차액 보전비율” 을 “이자차액보전 비율” 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별 표]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제9조제2항관련)

업체규모별 용도별	상시 종업원수 8명 이하	상시 종업원수 9명 이상 15명까지 또는 매출액 3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6명 이상 30명까지 또는 매출액 8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31명 이상 또는 매출액 15억원이상
경영안전자금	100백만원	150백만원	225백만원	300백만원
기술개발자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시설현대화자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지역특화산업자 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350백만원	500백만원

(주) 상시 종업원수 및 매출액 규모 중 업체에 유리한 쪽 적용

사 천 시 공 보

(뒷면)

- (주) 1. 신청서는 공부상(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등)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 자금지원 결정금액은 상황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 업 체 명 :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업체)명을 기재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기재
- 연락처(팩스) :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 개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중 택 1
- 연간매출액 : 결산재무제표상 총 매출액
(*수출액은 수출이 있을 경우 수출실적증명원 상의 매입금액을 기재)
- 자 본 : 결산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 기준으로 작성
- 종 업 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최근 3개월간 상시 종업원수를 평균
으로 계산(일용근로자 제외)
- 기타 서류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제출할 것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사천시 규칙 제69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제14조의3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공 보

사천시 고시 제 2019-5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3. 7.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8-7호 (2018. 12. 24.)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PE 부잔교 설치 및 연결도교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신수동 14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19. 03. 06.

사 천 시 공 보

제 604호

사천시 공고 제2019-333호

2019년도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LED등)사업 신청(추가모집) 공고

1. 사 업 명 : 2019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LED등)사업(추가모집)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천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LED등 보급)	8척	7,593	2,278	683	1,595	3,037

※ 사업량은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음.

3.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대체(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 신청방법 : 시 직접방문 신청

4.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2019. 4. 1. ~ 4. 19(3주간)
- 접수장소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어업지도팀 정선빈 / 055-831-3121)

5. 신청서류

- 1)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 2)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6.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 LED 집어등 설치어업인 우선
- ※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어업인(수협위판 실적이 있는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순

사 천 시 공 보

제 604 호

7. 신청제외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단, LED등을 설치한 자는 지원가능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중복되는 사업 품목 신청자
(VHF-DSC, 자동소화설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

8. 사업절차

- ① 사업대상자 신청(신청자 ⇒ 사천시)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의거 관련 서류 제출
- ② 사업대상자 선정(사천시장)
⇒ 신청서 접수기간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 내 선정
- ③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사천시장 ⇒ 신청자)
⇒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
- ④ 보조금교부 신청(사업자 ⇒ 사천시)
⇒ 보조금교부 신청(서식 2)
- ⑤ 사업추진 및 준공(사업자)
⇒ 장비·설비 등 설치 완료된 때 제반서류(준공계, 세금계산서 등) 제출
- ⑥ 사업비 지출(사천시장)

2019. 3. .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서식2]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사천시 공고 제2019-334호

사천 아쿠아리움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공모 공고

사천시 늑도동 470번지 일원에 아쿠아리움 건립을 위한 사용·수익허가신청(최초제안)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천 아쿠아리움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공모 공고 합니다.

2019. 03. 11.

사 천 시 장

1. 사용수익허가(최초제안) 개요

- 가. 사업명: 사천 아쿠아리움 건립
- 나.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늑도동 470번지 일원
- 다. 부지면적: 7,790㎡
- 라. 시설규모: 7,007㎡
- 마. 수조규모: 약 4,000톤
- 바. 건폐율: 31.53% 법적 40%
- 사. 용적률: 12.76% 법적 100%
- 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3개월
- 자. 사용·수익허가(최초제안): (주)에니멀킹덤 대표이사 서병향

2. 아쿠아리움 건립사업 주요내용

-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나.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아쿠아리움 및 부대시설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사천시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사 천 시 공 보

제604호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기부 채납방식으로 추진함.

- 다. 사용·수익허가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음.
- 라. 제출된 제안서는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300점), 건설계획(100점), 사업운영 및 관리계획(250점), 공익성 및 창의성(350점)을 구분 평가하며, 총 1,000점으로 함.(단, 평가점수 700점 미만일 경우 평가순위에 관계없이 사용·수익허가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 마. 사용·수익허가 신청자(최초 제안자) 우대점수는 총 평가점수의 10%로 함. 사용·수익허가 신청자(최초 제안자)는 공모공고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변경 제출시 우대점수는 총 평가점수의 5%로 함.
- 바. 사업제안자는 2,000톤 이상의 아쿠아리움의 운영실적 또는 위탁 관리실적이 있어야 함.(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 사. 아쿠아리움 사업제안은 4,000톤급을 기준으로 함.
- 아. 아쿠아리움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공모공고 만료일까지 사업제안이 없을 경우 사용·수익허가신청(최초제안자)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 자. 사천시의 운영수입 보장은 없음.

3. 관련자료 열람

가. 기 간 : 2019. 3. 11. ~ 2019. 4. 10.(30일간)

나. 열람장소 : 사천시청 관광진흥과

4. 공고 및 제출마감

가.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 : 2019. 3. 11. ~ 4. 10.(30일간) 단, 공고일 부터 30일째 되는날 18시까지이며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8시까지로 함

나. 제안서제출 : 사천시 관광진흥과(우편접수 불가)

사 천 시 공 보

제 604호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관광진흥과(☎055-831-2730)로 문의 및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main.web>)